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통지 의무 및 기한을 설정하여 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더불어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제재 대상 친족의 범위 규정을 신설하고, 대상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사업주의 통지 의무 및 기한 규정 신설(안 제15조)

나. 직장 내 성희롱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에 대한 범위 규정 신설(안 제22조)

다.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 기준 정비(안 제22조의2 및 별표 제2호가목)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부개정령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허용하여야”를 “단축 허용 여부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여부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제22조를 제22조의2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배우자

2.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4촌 이내의 혈족

3.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4촌 이내의 인척

별표 중 “(제22조 관련)”을 “(제22조의2 관련)”으로 한다.

별표의 “2. 개별기준”의 위반행위 “가목” 중 “사업주”를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로 하고, “가목의 3)” 중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를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가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로 하며, “가목의 4)”를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로서 과태료 부과기준은 200만원으로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① (생 략) <u><신 설></u>	제1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u>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여부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u>
<u>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 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을 허용하여야 한다.</u>	<u>③ ----- ----- ----- ----- ----- 단축 허용 여부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 으로 알려야 ---.</u>
<u>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	<u>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 -----.</u>
<u><신 설></u>	<u>제22조(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u>

<u>제22조</u> (생략)	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배우자 2.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4촌 이내의 혈족 3.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4촌 이내의 인척 <u>제22조의2</u> (현행 제22조와 같음)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의2 관련)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사업주, <u>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u> 가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2) 한 사람에게 수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3) <u>사업주, 법인의 대표자가</u>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4) <u>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u> | 법 제39조제2항 |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나 ~ 커 (생략) | (현행과 같음) | | 300만원 | <u>200만원</u> |
| | |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476